

제305회 정례회
2011. 12. 23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1. 12. 23(금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19일

(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이장근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이 2011. 6. 30부터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·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 확대
-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
⇒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 (안 제3조)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 (안 제4조, 별표1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,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의 개정·시행에 따라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,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100분의 30이상의” 을 “100분의 15이상의” 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기금의 용도)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1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제2항 중 “70%” 를 “70퍼센트” 로 하며,
제3항 중 “5%” 를 “5퍼센트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하고, “10인” 을 “10명” 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
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별표1 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재난관리기금의 용도(제4조 관련)

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가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
 - 나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, 장비임차 등의 사용
 - 다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
 - 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
 - 마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
 - 바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
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 - 가. 자연재해저감시설 :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사업
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 -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갑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
 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
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 -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
 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댐
 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항의 터널·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·제설시설, 토사 유출·낙석방지시설, 공동구, 지하도 및 육교
 -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
 - 나. 재난 예보·경보시설 : 설치·보수·보강

-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 시설 등 재난 예보·경보시설
 -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 -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
3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
 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 - 다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
4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
5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 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 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측량
7.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8.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액 총액의 <u>100분의 30이상의</u>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액 총액의 <u>100분의 15이상의</u>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.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 이라 한다)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</p> <p>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</p> <p>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</p> <p>4. 재난관련 장비 구입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<u>별표1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
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총 소요금액의 <u>70%</u>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용자금의 금리는 <u>5%</u>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, 용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총 소요금액의 <u>70퍼센트</u>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용자금의 금리는 <u>5퍼센트</u>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, 용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 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
<p>제9조(위원회의심의사항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9조(위원회의심의사항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적조(赤潮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
다.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
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
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라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
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
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**100분의 15 이상**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